

워싱턴의 단계별 접근 방법

	1 수정 1단계	2 2단계	3 3단계	4 4단계
오락 활동	일부 야외 오락 활동 (사냥, 낚시, 골프, 보트, 하이킹 등)	- 일부 성인/유소년 스포츠 - 12명 이상이 참여하는 달리기/경주/승마와 관련된 일부 야외 오락 활동	- 야외 그룹 오락 스포츠 활동 (50명 이하) - 오락 시설의 25% 미만 사용	모든 오락 활동의 재개
모임 (비종교 활동)	1주일에 한 번 집을 벗어난 5명 미만의 야외 모임 허가	1주일에 한 번 집을 벗어난 5명 이하의 모임	10명 이하의 모임 허가	10명을 초과하는 모임 허가
사업체/사업주 (모든 사업체는 주에서 작성한 안전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.)	- 2단계 지침을 만족하는 제조업, 건설업, 가사 서비스, 농촌 체험 관광, 사진 관련 업종, 차량 도서관 서비스, 실내 피트니스 및 드라이브 인 행사 - 소매업은 2단계 지침을 따르되 최대 수용인원의 30% 미만으로 운영 - 부동산은 2단계 지침을 따르되 최대 수용인원의 25%로 운영되어야 하고 실내 상담을 최대 30분으로 제한 - 전문 서비스는 2단계 지침을 따르되 최대 수용인원의 25%로 제한하고 폐쇄된 공간에서의 일대일 서비스는 예외로 함 실내 서비스는 최대 30분으로 제한 - 개인 서비스는 2단계 지침을 따르되 최대 수용인원의 25%로 제한하고 폐쇄된 공간에서의 일대일 서비스는 예외로 함 - 식당/술집**은 2단계 지침을 따르되 실내는 최대 수용인원의 25%, 실외는 최대 수용인원의 50%로 제한 - 애견 미용업은 2단계 지침을 따르되 최대 수용인원의 25% 미만으로 운영 - 직원이 있는 물놀이 시설	- 기타 제조업 - 추가 건설 공정 - 상주/가사 서비스 (유모, 집안청소, 등.) - 소매업 (제한을 둔 매장 내 구매 가능) - 부동산 - 리그전 볼링 - 도서관 및 미술관: 최대 수용인원의 25% 미만으로 운영 - 영화관: 최대 수용인원의 25% 미만으로 운영 - 농촌 체험 관광 - 전문 서비스/사무실 기반 사업체 (재택근무를 강력히 권고함) - 개인 서비스 (헤어 및 네일샵, 이발소, 문신시술소, 등.) - 애견 미용업 - 식당: 최대 수용인원의 50% 미만으로 운영. 6인 초과 테이블 사용금지 (바텐더 테이블 사용 금지) - 술집**: 식당 지침을 준수하지 못할 시 실내 취식 금지 - 드라이브 인 행사 - 피트니스 및 트레이닝: 300 제곱 피트당 한 명으로 제한. 대규모 시설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의 25%로 제한.	- 영화관: 최대 수용인원의 50% 미만으로 운영 - 고객 대면 정부 서비스 (재택근무를 강력히 권고함) - 도서관 - 미술관: 50% 미만으로 운영 - 피트니스 및 트레이닝: 200 제곱 피트의 거리 유지 또는 200제곱 피트당 한 명으로 제한, 대규모 시설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의 25%로 제한. - 식당: 최대 수용인원의 50% 미만으로 운영. 8인 초과 테이블 사용금지 (바텐더 테이블 사용 금지) - 나열되지 않은 다른 모든 기타 사업체 (단, 4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예외) - 소매업 행사 (공예품 전시회, 등.) 200명 미만으로 제한	- 나이트클럽 - 콘서트장 - 대규모 스포츠 행사 - 직원 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작업장의 운영을 재개하되 거리 유지 및 방역 준수를 지속함. - 라이브 공연

고위험군 인구*는 필수는 아니지만, 현재 단계에서 허가된 활동을 제외하고는 가정에 머무르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.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3단계까지 제한됩니다.

*고위험군 인구는 현재 CDC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. 65세 이상인 자, 아래 언급된 의료 상태(특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)의 모든 연령대; 만성 폐 질환 또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천식을 앓는 자, 심각한 심장 질환을 가진 자, 면역력이 약화된 자, 고도비만인, 당뇨병을 앓는 자, 혈액 투석 중인 신장 질환자, 간 질환을 가진 자, 양로원 또는 장기간 돌봄 시설에 거주하는 자.

**Safe Start Phased Plan의 목적을 고려하여, 술집은 펍, 맥주 공장, 포도주 양조장 및 증류주 공장으로 정의됩니다.

***Safe Start Phased Plan의 목적을 고려하여, 최대 수용인원은 소방 코드에 의해 결정된 건물의 최대 수용인원을 지칭합니다.